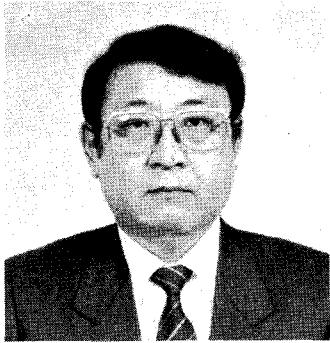


# 商標使用秩序를 確立하자



金 常 鉉

本會 常勤理事

韓國商品模造防止會 委員

商標制度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信賴關係를 바탕으로 하여 公正한 去來秩序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왔다 따라서 商標制度는 一定商品에 대하여 獨占排他權과 함께 그 商品에 대한 他人의 使用을 不許하는 禁止權으로서 商標權이 그 根幹이 되며, 法의 보호까지 받고있어 商去來질서의 確立과 商標를 통한 기업의 信用 축적이 이루어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商標는 國內외를 막론하고 소비자에게 商品을 識別시키고, 기업의 信用과 商品의 品質을 보호케하는 바로미터의 기능도 함으로써

메이커나 판매업자의 얼굴과도 같은 구실을 한다.

이와같이 商標기능이 우리 사회에 주는 비중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他社와의 競爭에서 品質보장을 앞세운 商標관리에 力點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宣傳의 효과를 노린 商標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自社商品을 深度있게 認識시키지 못하는 등 올바른 商標制度의 활용이 未洽한 것도 사실이다.

더우기 일부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相關法規의 未熟知 및 認識부족 등으로 登錄된 他人의 商標를 무단 使用하여 商去來질서를 문란시킬뿐 아니라 外國인의 著名商標를 주로 衣類 및 裝身具 등에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商標權者의 權利를 侵害함으로써 國際信義를 失墜시키는 事例가 있음은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도 外國有名商標가 붙은 外製品이라면 價格과 品質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려하는 우리나라 일부 소비자들의 奢侈消費性向에도 問題가 없지는 않다.

이와같은 오류된 商標使用秩序를 確立하기 위해 최근

검찰은 外國의 有名商標를 위조하거나 商品을 복제해 시중에 파는 知的所有權 侵害犯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들어 知的所有權 侵害범죄가 성행, 國內 流通질서를 어지럽히고 外國과의 通商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연말까지 商工部·文公部·市道와 합동으로 知的所有權 侵害사범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단속기간중 偽造商標나 商品을 尙書적으로 製造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형사처벌외에 허가취소, 세금추징등의 행정 처분도 함께 내리기도 했다.

특히 과거에 偽造商標나 特 尙書품을 만든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情報활동을 펴 우범자들의 계보를 파악하고, 이들 사범의 뿌리가 되는 製造者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며, 국제범죄조직들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그런데 올들어 6月末까지 적발된 商標法 및 不正競爭防止法 위반은 1백78건에 38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업인이나 판매업

## 商標選定時 유의사항

商標가 商品에 附着되어 使用될 때에는 그 商品의 얼굴 役割을 하게 되어 商品販賣와 直接的으로 關聯을 갖게 되므로 商標를 選定할 때에는 慎重하게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商標의 選定은 商標를 使用할 商品에 따라 考慮하여야 할 事項이 各기 다르다 하겠다.

一般的으로 부르기 쉽고, 記憶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記憶되며, 또 다른 商標와 區別하기 쉽고, 廣告宣傳의 效果等を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商標를 登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事項外에 商標法에 의한 登錄要件을 갖추었는지를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商標法 第8條의 規定을 보면 商標가 指定商品의 性質의 表示하거나 顯著한 地理的 名稱등인 경우에는 商標登錄을 許與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事由에 該當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商標法 第9條의 規定을 보면 先登錄商標가 있거나 國旗, 軍章 公益團體의 標章등은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로 明示하고 이러한 商標에 대하여는 商標登錄을 不許하고 있으므로 商標가 이러한 要件에 해당되는지도 調査하여야 할 것이다.

위 不登錄事由中에서 가장 問題가 되는 他人의 先登錄 商標의 存在如否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特許廳關覽室에 備置된 商標公報를 關覽하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商標登錄證 第1号

66

아직도 外國有名 商標가  
붙은 商品은  
무조건 사려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도  
問題가 無지않다.  
차제에 商標使用秩序를  
確立해야겠다.

99

자들은 차제에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책무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他人의 登錄商標를 正當하게 使用하여 商去來 질서를 바로 잡는데 協調하지 않는한 소비자보호의 길은 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또 자기 商標가 아닌 他人의 商標를 使用하려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간이나 特許廳에 모든 法的 절차를 밟아야만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商標사용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끝으로 生産이나 流通질서에서의 근본적인 商標사용 질서의 확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허영적 소비 풍조의 自制가 商標사용질서 확립의 根幹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